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9. 28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 9. 13. 채우진 의원 외 7인

나. 회부일자: 2022. 9. 14.

다. 상정일자: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22. 9. 27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남해석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립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마포구민에 대한 우선 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체육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주요내용

구립 체육시설 이용 시 구민 우선사용 근거를 규정함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가. 개정 목적

- 이 조례 개정안은 마포구립 체육시설 이용시 지역주민의 우선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, 이는 “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8조에 근거를 둔 개정으로 보임.

나. 조문 검토

- 개정안 제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“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”고 하고, 제1호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사람, 제2호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바,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.

다. 검토 의견

- 동 조례 개정안은 ‘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을 장려하고,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(善用)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 조문의 자구 역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동 조례안이 구민에게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체육시설 인접지역임에도 타 자치구 거주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에 대한 차별 또는 배제의 원리로 작용될 소지가 있음. 또 그에 따른 민원 발생도 예상되는 바,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구민 우선의 당위성을 확보함과 더불어, 공익시설의 개방이라는 공공성의 확보 역시 중요하므로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

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.

- 참고로,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구민 우선사용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는 중구, 서대문구, 동작구, 금천구, 송파구 등 총 5개 구로 나타나고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